

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2453
등록일자	2016.2.18.
결재일자	2016.2.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정책평가팀장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자치국장
박진영	문현우	임근래	02/18 김종두
협 조			

- '15. 12월 ~ '16. 1월 -  
**생산문서 공개설정률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 '15. 12월 ~ '16. 1월 -

# 생산문서 공개설정률 모니터링 결과 보고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생산 시, 부서별 공개설정률을 모니터링 하고 부진사항은 개선하여 공개율을 향상 시키고자 함

## I 추진개요

### 점검 개요

- 대 상 : 전부서(구의회,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주민센터 포함)
- 기 간 : '15. 12월 ~ '16. 1월
- 방 법 : 부서별 생산문서 목록 추출 후 확인
- 내 용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설정 현황 적정성 여부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설정률 현황 확인
  - 공통업무 문서의 공개/비공개 설정의 적정성 확인

### 문서 공개율 현황

- 국장이상 원문공개율 : 76.6% ※세부내역 : 붙임1

구 분	총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공개	부분공개		
전 수	5,473	3,513	681	1,279	76.6%

- 업무관리시스템 생산문서 공개율 : 60.2% ※세부내역 : 붙임2

구 분	총계	공 개		비공개	공개율(%)
		공개	부분공개		
전 수	71,268	33,895	9,010	28,363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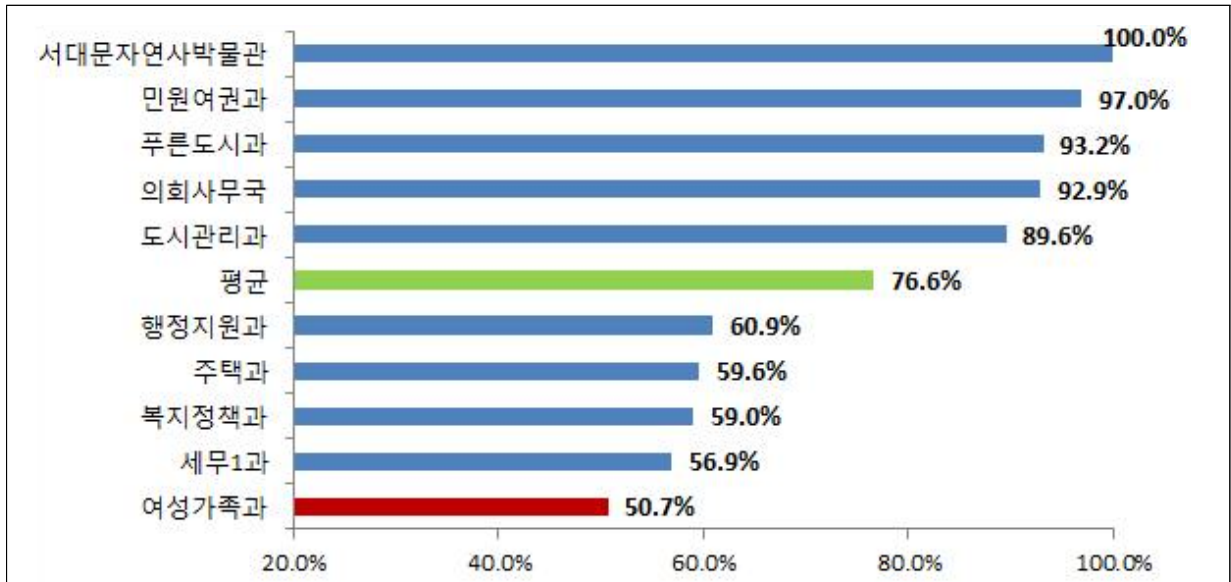
## II

# 모니터링 결과

### ☐ 부서별 공개설정률 현황

#### ○ 국장이상 원문공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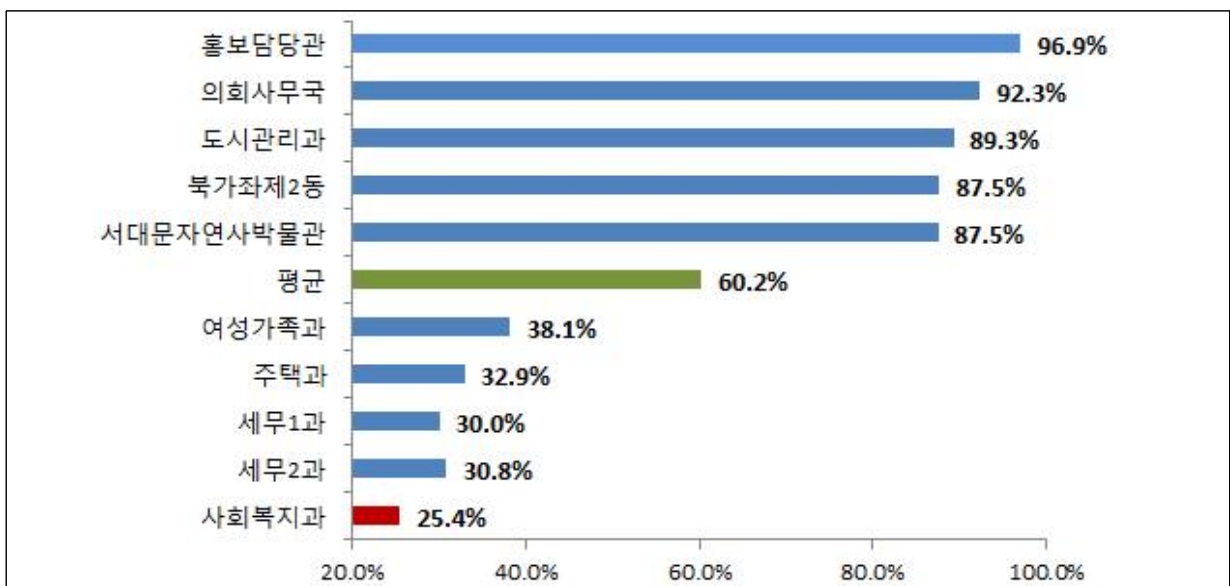
- 생산문서 공개율 평균 76.6%으로 지난 '10~11월 공개율에 비해 1.2% 하락



【 국장이상 원문 공개율 : 붙임1】

#### ○ 생산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생산문서 공개율은 60.2%로 지난 '10~11월 공개율에 비해 0.1% 상승



【 생산문서 공개율 : 붙임2】

## □ 비공개 사유별 현황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전체 비공개의 대부분의 사유는 제6호의 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이며,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제5호의 의사결정 및 내부 결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나타남

- 원문 공개 문서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비공개/부분공개’ 되어야 할 문서가 ‘공개’로 설정되는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

※ ‘15. 12월 ~ ‘16년 1월 : 10건

### 국장이상 원문공개

총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279	2	17	5	48	385	709	111	2

### 부서별 생산문서

총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8,363	41	337	54	351	3,639	21,226	2,679	36

## □ 비공개 설정 현황 분석

○ 일부 ‘비공개’ 문서의 경우,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 가능

- 전부서 공통 업무(출장, 구매 등) 중 ‘공개’ 및 ‘부분공개’로 설정 가능한 일부 문서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되어 있음

- 공가·연가신청서, 업무분장 및 팀배치, 출장 신청 및 보고는 공개 문서이며, 민원서류, 지출 및 회계문서의 대다수가 공개 또는 부분 공개 문서임에도 전체 비공개로 잘못 설정 되었음

- 초과근무신청은 ‘공개’ 이며, ‘초과근무 내역보고 또는 사후보고’는 직원 개인정보를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설정 필요

○ **공통업무 공개설정률 부진 부서 현황**

- ‘공개/부분공개’ 문서를 ‘비공개’로 잘못 설정하였음

설정 내용	해당부서	비고
출장 신청 및 보고 (20회 이상)	감사담당관, 건축과, 안전치수과	공개
공가·연가신청서 ( 20회 이상)	사회복지과, 세무1과,	공개 (사유포괄작성)
민원서류 (50회 이상)	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 건축과, 교통관리과, 도시재정비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의약과, 주택과, 청소과, 토목과, 환경과	부분공개
회계 서류 (20회 이상)	사회복지과, 세무2과, 안전치수, 주택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행정지원과	부분공개

### III 조치계획

**공개 및 부분공개 가능한 문서 적극적 공개 : 전부서**

○ 공개가 가능한 경우, 적극 공개

- 지속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지만 공개 가능한 문서는 공개로 설정  
(출장 신청서, 출장 결과보고, 초과근무 명령서)

○ 문서 ‘부분공개’ 설정 적극 확대

- 개인 정보 및 계좌번호 등 본문 문서에 일부가 비공개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마스킹 처리 후 ‘부분공개’로 설정 (민원서류, 계약  
서류, 지출 서류)

**부진부서 자체 교육 실시**

○ 부진부서에서는 자체 교육 실시 후, 사진 첨부하여 보고서 제출

## IV

## 행정사항

---

### 비공개/부분공개 문서가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

- 기안 본문 및 첨부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 이 공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붙임 1. 부서별 국장이상 원문공개율 1부.  
2.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율 1부. 끝.